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관련 법령 및 운영규정**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정	2008. 4. 3
개정	2008. 12. 4
개정	2009. 11. 6
개정	2010. 5. 12
개정	2010. 9. 8
개정	2010. 12. 21
개정	2011. 5. 12
개정	2013. 7. 3
개정	2013. 9. 4
개정	2014. 7.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수련활동"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련활동을 말한다.
2. "기본형 활동"은 1일 3시간 혹은 1일 2시간씩 2회기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비숙박 활동을 말한다.
3. "숙박형 활동"이란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4. "이동형 활동"이란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5.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와 그 자료의 내용이 제28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을 말한다. <개정 2014.7.21.>
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이하 "인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와 활동기록 제공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인증제도의 운영) 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 등 인증제도를 운영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활동진흥원과 연계·협력하여 인증받은 청소년활동의 홍보 및 지원, 사후관리 교육운영 등 인증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개정 2014.7.21.>

제 2 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제4조(기능)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3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신청 내용의 확인, 의견청취 및 보완·개선 요구
2. 법 제36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설정, 인증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
3. 법 제36조의3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결과 기록의 유지·관리 조치
5. 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인증 신청 제한 조치
6. 영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제정
7. 영 제22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선발·활용
8. 규칙 제15조의4에 따른 전문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 지정 <개정 2014.7.21.>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와 관련하여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 ①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이하 "인증위원"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이하 "인증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리고, 해당기관의 직원 중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회 회의에 불참하는 인증위원이 사전에 인증위원장에게 위임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된 사항에 따르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인증위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인증심의 건에 대해서는 심의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인증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활동진흥원의 인증제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 ② 간사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영 제19조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 목적, 운영 기간, 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7.21.>

제8조(의견청취) 인증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참고인, 인증심사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제9조(부의) ① 인증위원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의안을 첨부하여 소집요청일로부터 10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 ② 간사는 인증위원장으로 부터 인증위원회 소집 결정을 받아 부의안을 첨부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위원회 소집통지서를 회의 소집일로부터 7일전까지 각 인증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장은 부의 사항 중 보고 안건이나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안건과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인증위원장은 각 인증위원의 서면결의서를 집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면결의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10조(의사록) ① 간사는 인증위원회 의사 진행 및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인증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인증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얻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 ② 회의에 부의한 원안, 의사록, 서면결의록 및 기타 참고 서류는 간사의 책임 하에 활동진흥원에 보관한다.

③ 인증위원회 기록물의 보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인 증 심 사 원

제11조(선발 절차) ① 인증위원회는 별표1의 절차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선발한다.

- ② 활동진흥원은 인증신청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 시기, 선발예정인원,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무연수계획 등을 포함한 인증심사원 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위원회에 인증심사원 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③ 인증위원회는 활동진흥원에 인증심사원 선발 및 직무연수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응시원서) 인증심사원 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선발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응시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활동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심사원 선발에 응시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5조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7.21.>

제14조(서류·면접심사) ① 인증심사원 선발을 위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합격자 결정은 별표2의 인증심사원 서류심사 형식요건 검사 기준에 적합하고, 별표3의 인증심사원 선발 서류심사 배점기준 성적과 별표4의 인증심사원 선발 면접심사 배점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식요건 검사 기준에 적합한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의 1.5 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은 인증위원으로 하며, 필요 시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증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서류, 면접심사에 합격한 자는 제15조에 따른 당해 회차 또는 차기 회차 직무연수를 이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15조(직무연수 대상 및 참가) ① 인증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인증심사원 선발을 위한 서류·면접심사에 합격한 자와 규칙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 ②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인증심사원은 2년 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혹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활동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제16조(연수운영본부의 설치·운영) ① 활동진흥원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때 연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원 연수운영본부(이하 "연수운영본부"라 한다)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수운영본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2. 연수 참가, 연수 생활 안내 및 관리
3. 연수 강사 관리 및 지원
4.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처
5. 연수 참가자의 성적 평가 및 관리
6. 그 밖에 연수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연수 내용) 연수내용은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1.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의 이해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및 관련 법규, 제 규정
3. 인증심사원의 직무 수행 절차 및 직무 윤리
4.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5. 인증심사기준 및 적용방법, 심사보고서 작성
6. 그 밖에 인증심사원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

제18조(연수시간 및 연수과정의 구성) ① 연수시간은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며, 강의·분임활동·실습·사례연구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4.7.21.>

② 연수과정은 연속된 일정의 숙박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인증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및 출퇴근 연수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연수과정의 운영 등) 연수참가자는 연수 전 과정에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연수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14.7.21.>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기타 연수운영본부에서 승인하는 경우

제20조(연수성적평가) ① 인증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로 연수성적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수 성적평가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평가 항목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평가는 연수생의 태도, 행동 등 연수 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로 기본점수 40점을 부여하고, 별표5의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생활평가 기준표에 따른 감점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과제평가는 연수운영본부에서 제시한 과제물에 대해 연수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과제물을 평가하며, 총60점을 배점하고, 평가 기준은 별표6과 같다.
- ② 연수성적 종합평가는 생활평가, 과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수료는 연수성적 종합평가 총점의 7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생활평가 상에 퇴소 사유가 된 연수생은 종합평가 총점이 70% 이상이 되더라도 수료 할 수 없다.
- ③ 연수과정의 개발 등 연구 목적에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연수생 평가 등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제21조(수료증) 활동진흥원의 장은 직무연수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2조(등록 및 위촉)** ① 직무연수를 수료한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활동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및 변동 사항을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를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심사원 위촉장을 발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4.7.21.>

- 제23조(보수교육)** ① 활동진흥원은 인증심사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을 위하여 인증심사원 보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인증위원회는 1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시행규칙 제15조 및 규정 제15조에 따른 직무연수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 기준)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공정한 방식으로 심사 분석, 평가, 판정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인증심사 활동에 대한 능력 발휘 및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3. 인증기준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심사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인증심사원은 인격적 성숙함을 견지하여 청소년으로부터 존중되고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5. 인증신청자에게 자문을 제공할 때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6. 이해가 상충하거나 이권 다툼에 관여하지 않으며, 심사 분석 판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나 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7. 인증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심사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논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8. 인증 신청자 및 인증신청과 관련한 관계기관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인증 심사 분석 전

후 또는 심사분석 기간 중 향응, 금품, 선물 또는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9. 인증심사원 선발과정, 자격등록 또는 심사분석 시 거짓 또는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인증심사원 포상 및 징계) ①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인증심사원으로서 역할수행 및 태도가 우수하고 성실하여 모범이 된 자
2. 제도개선, 창의적 제안 등으로 제도의 효율화 또는 성과에 크게 기여한 자
3. 기타 인증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② 인증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위촉된 인증심사원이 별표1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4 장 수련활동의 인증

제26조(인증 신청 대상의 범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2항 및 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이거나 규칙 별표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증신청 대상 중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혹은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등은 제외한다.

④ 인증 신청 시 운영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2. 영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에서 청소년활동지도 업무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규칙 제7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자로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6. 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운영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자

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에 관련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제26조의2(운영담당자의 보수교육) ① 제2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운영담당자는 매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운영담당자로서의 자격 인정기간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운영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1.>

제26조의3(전문인력 교육과정의 지정절차 등) ① 규칙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전문자격 혹은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인력 교육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전문인력 교육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 증빙 서류
3.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과목을 포함한 최소 1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3. 상처 및 골절처치
4. 관련법령 등

③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별표17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전문인력 교육 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는 전문인력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른 고지를 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때
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14.7.21.>

제26조의4(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역할) ①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전문인력 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4호 서식의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교육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보고서를 인증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제27조(인증 신청 및 접수)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정보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내용의 사전검토 및 형식요건 검사를 통해 인증심사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해당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③ 활동진흥원은 제2항의 형식요건 검사 및 내용의 보완이 완료된 경우 인증정보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수하고, 인증신청자가 인증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인증 기준) ① 법 제36조와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공통기준, 개별기준 및 특별기준으로 구성하며, 각 인증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4.7.21.>

② 공통기준은 모든 수련활동 인증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의 영역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기준별 확인요소를 포함한다. 다만 국제청소년활동의 경우 인증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개별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 활동에 추가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각각 유형별 인증기준과 확인요소를 말한다. 다만 국제청소년활동의 경우 인증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특별기준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나 사회적 요구 또는 활동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전문적 기량이나 안전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기준으로 인증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인증기준의 증빙을 면제하거나 인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인증 절차 및 처리기간) ①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인증 가부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신청서류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이의신청과 재심사 기간은 제1항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③ 인증 절차는 별표8과 같다.

제30조(인증 심사)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인증 신청이 인증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을 인증심사 1건 당 2명 이상을 배정하여 심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사 시에는 인증심사원을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21.>

-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배정은 활동진흥원에서 제32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4.7.21.>
- ④ 인증심사에 배정된 인증심사원은 별표10에 따라 심사내용, 심사점수 및 심사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11호 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와 제12호 서식의 인증심사분석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인증기준의 평점은 별표9와 같다.
- ⑧ 활동진흥원은 인증심사원간 현저한 차이로 인증과 불인증을 같음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 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활동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의 인증심사원에게 심사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제31조(인증심사 결과 판정) ① 인증위원회는 제3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심의보류 등으로 인증심사 결과를 판정한다.

-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건부인증으로 하고 활동진흥원에 제출된 자료의 보완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1. 다른 인증기준에 영향이 없고, 해당 기준만을 보완하는 경우
 - 2. 1/3 미만의 인증기준에 불인증 점수를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4.7.21>

제32조(인증심사원 배정 절차) ① 활동진흥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증심사원 배정 순서를 정하고, 인증신청 건별로 인증심사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1. 인증신청 프로그램과 유사 분야의 전문연수이수자 및 활동지도 경력자
 - 2. 청소년활동분야 경력이 많은 자
 - 3. 기타 인증위원회에서 정한 배정 순서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인증심사원 중 1인을 주심사원으로 선정하여 통보 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 배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활동진흥원은 상근심사원을 인증심사원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33조(배정 제한 및 이해관계 사실 통보) ① 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32조에 따른 인증심사원 배정 시 인증심사 업무의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확인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7.21>

- 1. 인증심사원이 종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신청한 인증심사 건
 - 2. 인증심사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신청한 인증심사 건
 - 3. 인증심사원이 자문을 실시한 기관에서 신청한 인증심사 건
- ②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 신청 건에 인증심사 배정을 받은 경우 이해

관계 사실을 인증심사 착수 이전에 활동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활동진흥원은 이를 확인하여 인증심사원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인증심사 기간 중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기관의 인증 신청 건
 2. 사적, 공적으로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계획 중인 자의 인증 신청 건
 3. 해당 인증 신청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해당 프로그램에 지도자로 참여하기로 한 인증 신청 건
 4. 그 밖에 객관적인 인증심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자의 인증 신청 건
- ③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심사 전·후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등을 위해 서약하여야 한다.

제34조(현장방문 심사) ① 활동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방문 심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출된 인증신청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
 2.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개정 2014.7.21>
 3. 최초로 인증을 신청한 기관의 활동인 경우
 4. 인증심사 진행 중 해당 활동에 배정된 인증심사원이 요청한 경우
- ② 현장방문 심사원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제35조(이의 신청) ① 제31조의 인증심사 결과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여부 검토를 포함한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 ③ 재심사는 현장방문 등 심사원을 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인증서 교부) 인증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을 확인하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7조(인증의 표지)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수련활동 진행 시 별지 제18호 서식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인증마크의 제작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의2(인증을 받은 자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인증 받은 사항대로의 프로그램 운영
2. 사후관리 관련 규정의 준수
3. 청소년에게 안전한 활동의 제공
4. 그 밖의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

<본조신설 2014.7.21>

제 5 장 인증의 사후관리

제38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 ① 인증위원회는 인증 받은 사항과 동일한 활동이거나 활동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규칙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45일 이전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이 휴·폐업 등 더 이상 인증수련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21>

제39조(인증사항 변경 승인 요청)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제18호에 해당하는 인증사항을 변경하여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변경 승인 요청을 활동실시 14일 이전까지 인증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활동대상 혹은 활동목적 등 별표 제18호에서 지정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인증위원회는 변경 사항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심사원에게 변경 사항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7.21>

제40조(인증사항 이행여부확인) ① 인증위원회는 활동진흥원에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 혹은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자체점검결과를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전 필수 인증 대상 활동 <개정 2014.7.21>
2. 삭제 <2013.7.3.>
3. 인증수련활동 운영자가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제43조에 따른 활동 실시일자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5. 기타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이 진행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 6. 최초로 인증을 받은 시설 및 단체의 경우
- ③ 활동진흥원은 현장 확인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증심사원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인증수련활동의 인증심사를 담당할 인증심사원
 - 2. 해당 활동장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인증심사원
 - 3. 기타 해당 인증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활동 경험이 있는 인증심사원
- ④ 제3항에 따라 배정된 인증심사원은 별표11의 절차에 따라 인증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현장 확인 점검표를 심사종료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 ⑤ 인증사항 이행여부확인 기준 및 평점 적용 기준은 각각 별표12, 별표13과 같다.

제41조(이행여부확인 후 조치) ① 인증위원회는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행여부 확인 결과를 판정한다.

- 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에 따라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보완개선 요청서를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에 교부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완 개선을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조치사항을 활동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결과 판정 기준은 별표14와 같다.
<전문개정 2014.7.21>

제41조의1(긴급조치 등) ①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자는 참여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활동진흥원에 알려야 한다.

- ② 활동진흥원은 발생 상황에 따라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활동진흥원은 시정요청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제42조(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의 취소나 정지를 명한 경우 인증 받은 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나 정지를 받은 자는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7.21>
- ③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 1. 활동 실시 일자를 미리 지정하여 인증 받은 경우
 - 2. 활동 특성 상 최초활동실시 후 1년 이내에 재실시 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인증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43조(활동 실시 일자 통보) 이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가 최초활동실시 이후 활동 실시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수련활동을 재실시 하고자 할 때는 참가자 모집 또는 인증수련활동 실시 시작 14일 이전에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일자 통보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제 6 장 활 동 기 록 관 리

제44조(활동 결과 기록)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인증정보시스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제45조(활동기록 유지 관리 및 제공) ① 활동진흥원은 제44조에 따른 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25호 및 제28호 서식에 따른 인증수련활동기록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기록확인서의 유지·관리 및 제공은 인증정보시스템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7.21>

제 7 장 보 칙

제46조(인증정보시스템의 운영) 활동진흥원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공과 법 제36조에 따른 수련활동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기록된 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1>

제47조(수당 등) 활동진흥원은 인증위원, 인증심사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인증 수수료)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비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인증수련활동의 홍보)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수련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물, 광고물,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이나 단체가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인증수련활동명, 인증대상 범위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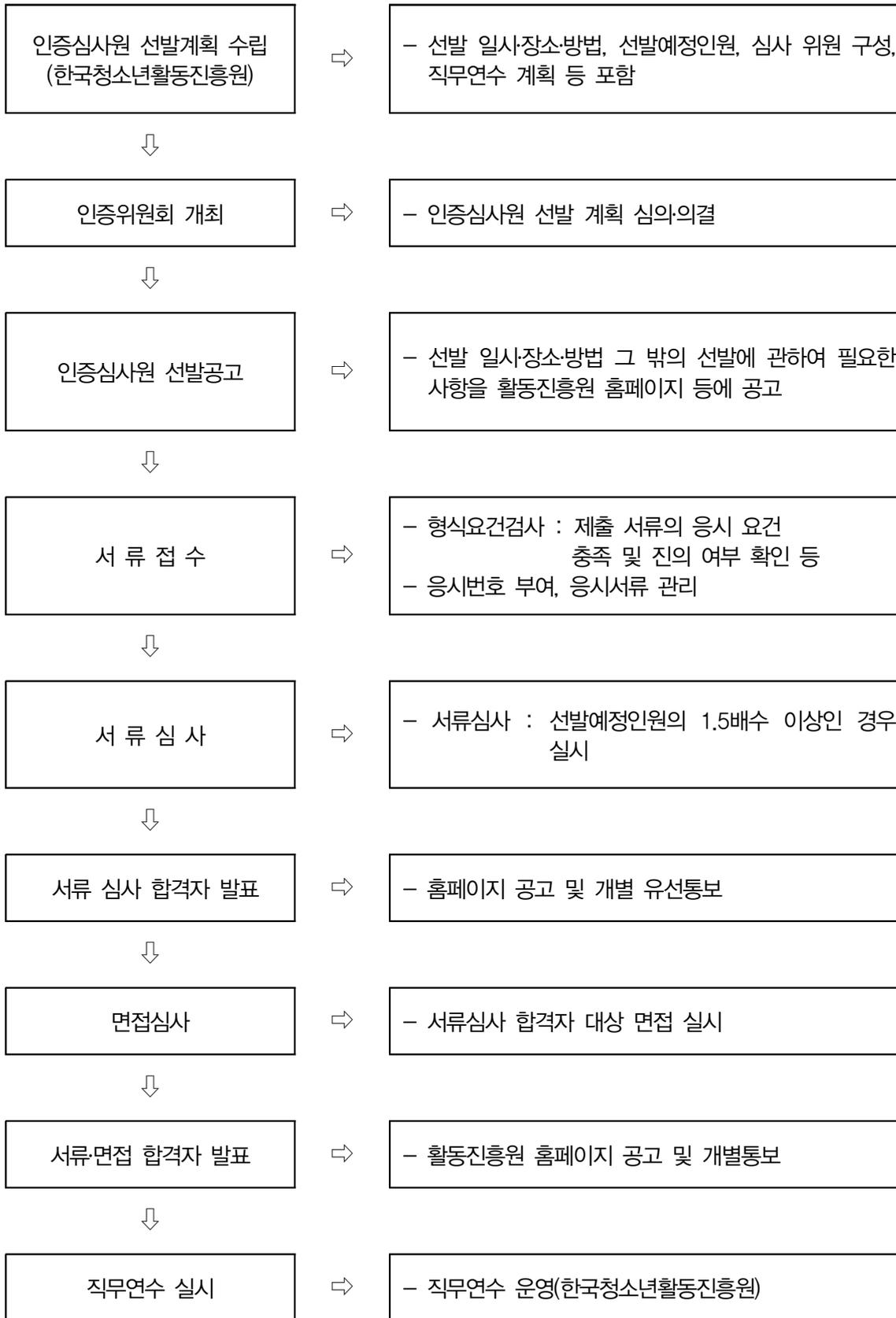
제50조(인증수련활동 정보 제공) 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제51조(기타사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위원장이 정하며, 시행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심사원 선발 절차 - (제11조 관련)



[별표 2] 인증심사원 서류심사 형식요건 검사 기준 - (제14조 관련)

항 목	검사기준		판 정	비 고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충족	미충족	미충족 시 탈락	
-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제출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선발 응시원서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시 탈락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진위	허위	허위 판명 시 탈락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서류와의 일치 여부 및 증빙서류 첨부 여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시 해당 점수 미반영	
- 응시원서 상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기재	미기재	미기재 시 탈락	

[별표 3] 인증심사원 선발 서류심사 배점기준 - (제14조 관련)

구 분	배 점 기 준	배 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급 자격증 소지자	15
	2급 자격증 소지자	13
	3급 자격증 소지자	11
청소년활동분야 실무 경력	11년 이상	16
	9년 이상 11년 미만	13
	7년 이상 9년 미만	11
	5년 이상 7년 미만	9
	3년 이상 5년 미만	7
	1년 이상 3년 미만	5
학 력	박사학위 소지자	9
	석사학위 소지자	6
	학사학위 소지자	4
	전문학사 소지자	3
	고졸자	2
프로그램 개발실적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5건 이상	7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4건 이상	6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3건 이상	5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2건 이상	4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실적 1건 이상	3
청소년활동분야 전문연수경력	5회 이상	3
	3회 이상 4회 이하	2
	1회 이상 2회 이하	1
총 점		50점

[별표 4] 인증심사원 선발 면접심사 배점기준 - (제14조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배 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8	6	4	2
품 성	- 청소년활동의 핵심가치를 알고 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신념을 갖고 있는가?					
	- 인증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 인증심사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					
지 식	- 청소년에 관한 발달과정, 심리, 문화, 문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등에 관한 지식은 갖추고 있는가?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시행목적, 관계법령, 인증처리 절차, 인증요소, 기록 유지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경험과 표현	- 청소년 현장에서의 경력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 말과 글의 표현능력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기 술	- 심사수행을 위한 행정능력은 어느정도 갖추었는가?					
	- 심사와 관련된 심사수행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는가?					
만 점		100				

[별표 5]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생활평가 기준표 - (제20조 관련)

구 분	감점요소	기준	감점	비 고
연수관리	- 무단결석	1일	10	
	- 무단결강	1회	5	
	- 무단지각, 이석, 외출	1회	3	
	- 승인 후 지각, 이석, 외출	1회	1	
	- 강의, 실습, 토의 등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1회	2	
	- 연수과정 전반의 질서문란행위	1회	2	
	- 승인 후 결강	1회	2	
생활태도	- 인원 파악 시 무단 불참	1회	2	
	- 금연구역 흡연 시	1회	2	
	- 무단 외출	1회	3	
	- 무단 외박	1일	5	
	- 품위손상, 실내음주 및 도박 등	1회	5	
	- 기물 파손	1회	5	
	- 기타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	
기 타	1. 감점합계 10점 이상시 퇴소, 7점 이상 경고, 5점 이상 주의 처리 2. 지각은 강의시간 30% 이내에 입실자는 3점, 30% 이상의 경우 4점 감점 부과 3. 동일한 행위가 2개 이상의 감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점수 하나만 적용 4. 등록 당일 이후 도착하는 연수생은 귀가 조치			

[별표 6]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과제평가 기준표 - (제20조 관련)

영역	평가항목	배점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과제 이해도	- 제시된 과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접근 하였는가	5	4	3	2	1
	- 실제 심사 시 활용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5	4	3	2	1
논리성	- 제시된 논리 전개가 타당한가	5	4	3	2	1
	- 논리 전개가 체계적인가	5	4	3	2	1
현장성	- 사실에 입각하여 과제를 해결 하였는가	5	4	3	2	1
	- 실제 심사 진행시 적용 가능한가	5	4	3	2	1
창의성	- 과제 해결 과정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가	5	4	3	2	1
	- 과제 내용은 실무에 적용 가능한가	5	4	3	2	1
기 타	1. 과제물 제출자는 기본점수 20점 부여 2. 과제물 미제출자는 0점 처리 3. 팀별 실습 및 발표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팀원은 동일 점수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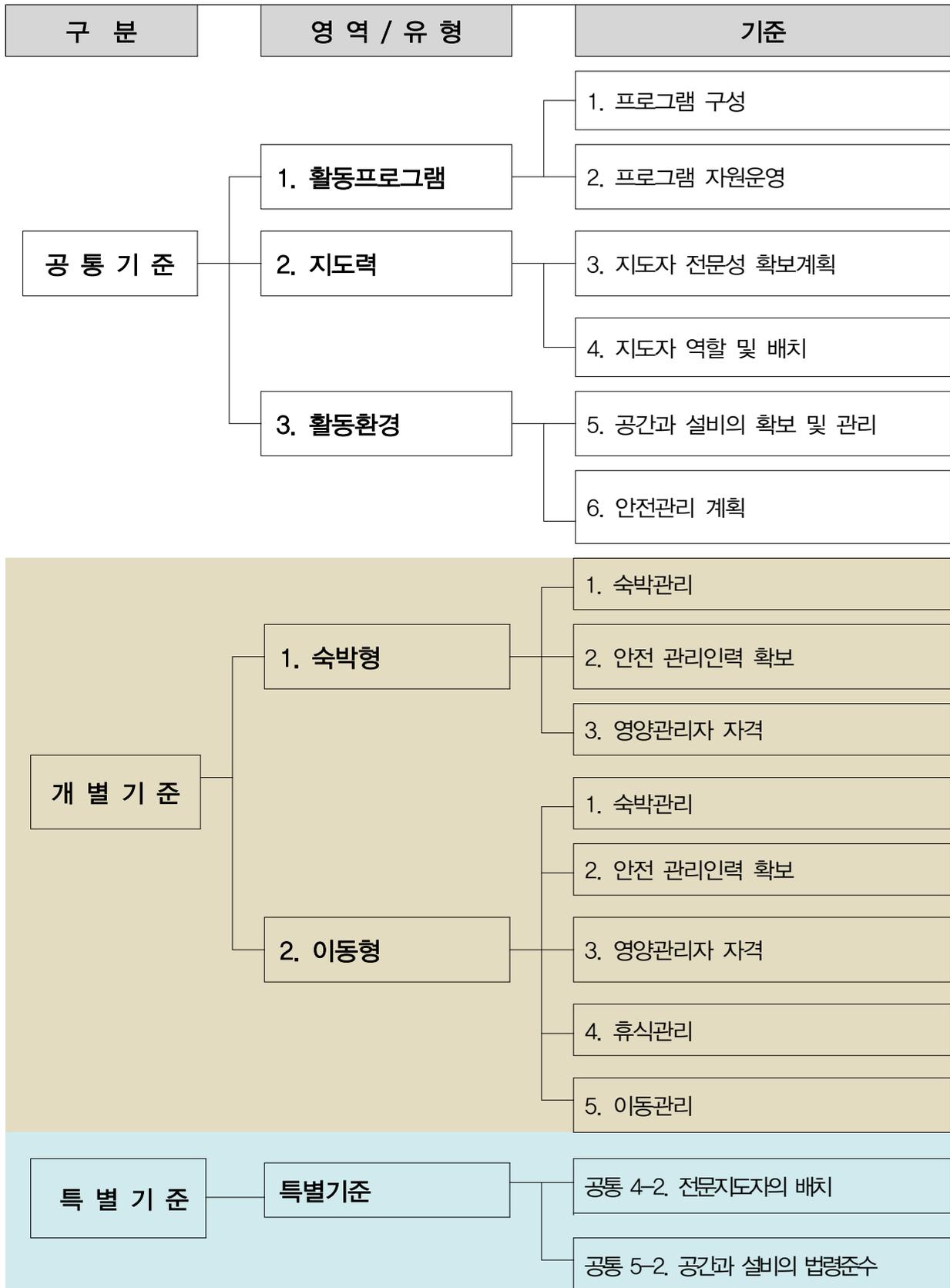
[별표 7]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 (제28조 관련)

국내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구 분		영역 / 유형		기준	확인요소	구 분		영역 / 유형	기준 (국내/해외)	확인요소 (국내/해외)	
인 증 기 준	공통 기준	1.활동프로그램		2	5	인 증 기 준	공통 기준	1.활동프로그램		2/2	7/7
		2.지도력		2	5			2.지도력		2/2	7/7
		3.활동환경		2	4			3.활동환경		2/2	4/5
		소 계		6	14			소 계		6/6	18/19
	개별 기준	활동 유형	숙박형	3	4	개별 기준	활동 유형	숙박형	3/2	4/3	
			이동형	5	6			이동형	5/4	6/5	
	특별기준			2	2	특별기준			2	2	

※ 국제청소년활동에서 "국내"라 함은 외국의 청소년들이 입국하여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하며, "해외"라 함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행하는 활동 또는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말한다.

※ 특별기준은 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추가로 적용한다.

□ 인증기준 구성



□ 공통기준

[1] 활동프로그램

인 증 기 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프로그램 구성	<p>가. 참여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목적, 목표, 프로그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단, 프로그램 일정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p> <p>나.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계획(절차, 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야외활동 해당)</p>	<p>가. 참여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목적, 목표, 프로그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단, 프로그램 일정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p> <p>나.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계획(절차, 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야외활동 해당)</p> <p>라. 참가자 구성방법과 사전 교육 일정 및 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p>	<p>가. 참여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 목적, 목표, 프로그램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단, 프로그램 일정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 일정으로 제시되어 있다)</p> <p>나. 프로그램 평가 및 환류 계획(절차, 방법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유사 시 대처방안이 기술되어 있다. (야외활동 해당)</p> <p>라. 참가자 구성방법과 사전 교육 일정 및 교육내용이 제시되어 있다.</p>
2. 프로그램 자원운영	<p>가.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p> <p>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가.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p> <p>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참가비 부담 수준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다.</p>	<p>가. 프로그램 예산 산출근거가 기술되어 있다. (단, 상호교류시 교류협력각서(MOU) 또는 상호협조공문과 자부담만 내역 명시)</p> <p>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다. 참가비 부담 수준이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다.</p>

[2] 지도력

인 증 기 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3. 지도자 자격	<p>가. 규정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활동기간 중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나.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전문 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p> <p>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가. 규정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활동기간 중 상근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나.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전문 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p> <p>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라. 지도자중 해외활동 유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다.</p>	<p>가. 규정 제2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운영담당자가 활동기간 중 상근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p> <p>나.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른 전문 인력이 1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p> <p>다.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지도자가 안전한 지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 수준, 교육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p> <p>라. 지도자중 해외활동 유 경험자가 포함되어 있다.</p>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p>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p> <p>나.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15-1]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p>	<p>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p> <p>나.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15-1]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p> <p>다. 국제청소년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활동운영 형태(전문기관 위탁 또는 컨소시엄 등)와 역할 분담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p>	<p>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p> <p>나.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15-1]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p> <p>다. 국제청소년활동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활동운영 형태(전문기관 위탁 또는 컨소시엄 등)와 역할 분담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p>

[3] 활동환경

인 증 기 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p>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p> <p>나.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p>	<p>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p> <p>나.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p>	<p>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를 확보하고 있다.</p> <p>나. 공간과 설비가 활동에 적합하도록 유지 및 관리되고 있다. (단, 사진 및 홍보자료로 증빙 가능)</p>
6. 안전관리 계획	<p>가.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사전안전 교육계획,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 안전사고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나.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가.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사전안전 교육계획,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 안전사고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나.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가.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환경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사전안전 교육계획, 비상 시 대비 설비 및 기구, 안전사고대책 등)이 수립되어 있다.</p> <p>나. 안전사고 발생시, 배상을 위한 대인 및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p> <p>다. 방문국의 국정이 불안한 상황(전쟁, 질병, 분쟁 등)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문국과 협력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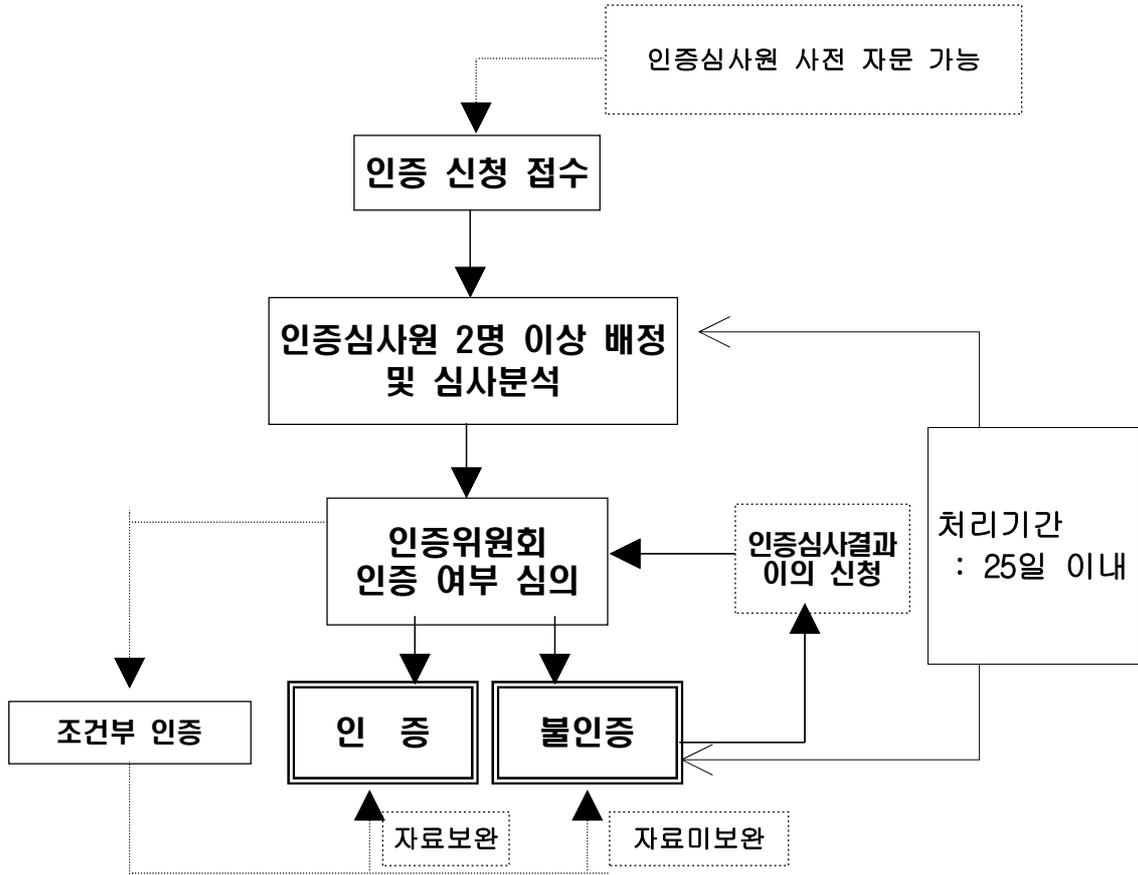
□ 개별기준

인 증 기 준	활동유형		확 인 요 소		
	숙박형	이동형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1. 숙박 관리	○	○	- 참가자의 숙박공간이 적절하게 확보되고 안전을 위한 야간 생활지도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다.	좌동	좌동
2. 안전관리인력 확보	○	○	- 참여청소년의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 지도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제3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있다.	좌동	좌동
3. 영양관리자 자격	○	○	- 관련법령에 따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한 등록여부 혹은 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좌동	[삭제]
4. 이동 관리		○	-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 관리 계획이 있다.	-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 관리 계획이 있다.	- 프로그램 특성과 참가대상에 맞는 1일 최대 이동거리를 적절히 제한한 기준 또는 이동 관리 계획이 있다. (단, 이동계획 및 이동수단 명시)
5. 휴식 관리		○	-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 참여청소년 및 지도자 휴식 일정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다. (단, 해외주관 프로그램 경우 탄력적 적용)

□ 특별기준

인 증 기 준	확 인 요 소		
	국내청소년활동	국제청소년활동	
		국내교류	해외활동
4-2. 전문지도자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 수는 최소 2명 이상으로 [별표 15-2]의 배치규정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좌 동]	[좌 동]
5-2. 공간과 설비의 법령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등록·허가·관리사항 등이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좌 동]	[좌 동]

[별표 8] 인증절차 - (제29조 관련)



[별표 9] 인증여부 판단 기준 - (제30조 관련)

1. 인증요소별 평점 적용 기준

가. 0점 = 자료 없음. 인증기준 미달

나. 1점 = 약간의 자료는 있으나, 인증기준 충족에 미흡

다. 2점 = 대부분의 자료 있으며, 인증수준에 도달

라. 3점 = 모든 자료 있으며, 인증기준 충족

2.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모든 인증 요소에 대해 0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득할 수 없다.

[별표 10] 인증심사 과정 - (제34조 관련)

- 심사준비
 - 심사자료 수령 및 제출 자료 확인
 - 인증심사 서약서 제출



- 서류심사
 - 인증심사분석표 작성
 - 서류심사 결과 작성



- 현장방문 (필요시 실시)
 - 인증신청기관 및 활동 현장 방문 확인 및 분석
 - 현장방문 결과 정리 및 작성



- 결과정리
 - 심사결과 분석, 정리 및 기준별 최종 점수 부여



- 결과보고
 -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 등 제출(활동진흥원)
 - 인증심사결과 인증위원회 출석·화상 보고/ 질의응답 (필요시)

[별표 11]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절차 (제40조 제4항 관련)

- 이행여부 확인 준비
 - 인증심사자료 수령 및 내용 분석
 - 인증기준별 이행여부 확인 대상 분석



- 이행여부 확인 실시
 - 인증수련활동 실시 현장 방문 실사
 - 지도자, 참여청소년 등 관계자 인터뷰 및 조사
 - 인증수련활동 운영담당자에게 항목별 확인결과 고지
 - (필요 시) 참여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즉시 활동진행원으로 통보



- 결과 정리
 - 이행여부 확인 결과보고 자료 정리
 -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 심사 완료 7일 이내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고서 제출 (활동진행원)
 - 이행여부 확인 결과 인증위원회 출석 보고 (필요시)

[별표 12]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기준 (제40조 제6항 관련)

□ 공통기준

영역	확 인 기 준	확인요소
활동프로그램	1. 대상 및 일정	- 프로그램이 계획된 대상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다. - 프로그램 운영 일정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2. 자원 및 기자재	- 사용하는 기자재 등 자원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청소년이 사용하는 기자재의 상태 및 수량이 적합하다.
	3. 평가 및 관리	- 사용하는 평가도구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참여청소년에게 활동기록 등 인증제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지도력	4. 전문성 관리	- 운영담당자와 전문 인력은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전문지도자는 계획된 수준대로 참여하고 있다.
	5. 배치인력 관리	- 프로그램별 지도자 수는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지도자 교육결과 및 개별 지도자의 숙지수준이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6. 지도역량 관리	- 지도자서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참여청소년에 대해 강요나 폭력이 없고, 지도자의 역할을 준수하고 있다.
활동환경	7. 확보 및 점검	-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활동장소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활동장소의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8. 교육 및 보험	- 참여청소년에게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 전원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9. 위생 및 관리	- 활동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비상전달체계 및 안전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개별기준

영역	확 인 기 준	확인요소
숙박/ 이동형	1. 숙박관리	- 참여청소년 인원내 적합한 숙박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 야간생활 지도는 인증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 안전 및 영양관리	- 안전관리 담당자는 인증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 배치된 지도자의 성범죄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 참여청소년에게 적합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다.
이동형	3. 이동 및 휴식관리	- 이동거리에 대한 기준 및 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 청소년 및 지도자에게 적절한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

[별표 13]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평점 적용 기준 (제40조 제6항 관련)

○ 확인요소에 대한 평가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그렇지 않다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함
보통이다	인증 받은 사항과 다르게 운영하였으나, 제시된 대안이 인증수준에 도달함
그렇다	인증 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함

○ 확인기준에 대한 평점 적용 기준

3점	○ 확인요소가 모두 ‘그렇다’ 이다.
2점	○ 확인요소에 ‘그렇지 않다’ 를 포함하지 않는다.
1점	○ 확인요소에 1개 이상 ‘그렇지 않다’ 를 포함한다.

[별표 14]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결과 판정 기준 - (제41조 관련)

등급	판정기준	조치사항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형 24점 이상 - 숙박형 31점 이상 - 이동형 34점 이상 ○ 1점 항목 : 없음 ○ 보완개선사항 :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이행여부 확인 면제 가능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p>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형 24점 이상 - 숙박형 29점 이상 - 이동형 32점 이상 ○ 1점 항목 : 없음 ○ 보완개선사항 : 2건 이내 경미한 사안 	<p style="text-align: center;">향후 2년간 이행여부 현장 확인 면제</p>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형 18점 이상 - 숙박형 22점 이상 - 이동형 24점 이상 ○ 1점 항목 : 2개 이내 ○ 보완개선사항 : 3건 이내 경미한 사안 	<p style="text-align: center;">향후 1년간 이행여부 현장 확인 면제</p>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점 항목 : 3개 이상 ○ 보완개선사항 : 4개 이상 ※ 1개 이상의 중대한 보완개선 	<p style="text-align: center;">보완·개선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차기 회차 진행 시 이행여부 확인 실시</p>
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로 인증사항의 현저한 위반이 있는 경우 ○ 요청받은 보완·개선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운영규정 제42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검토</p>

※ 총점 최고점수 - 기본형 27점, 숙박형 33점, 이동형 36점

[별표 15-1] 인증수련활동 지도자 배치 규정 - (인증기준 4번 관련)

실내·외	야외	지도자 자격	비 고
30:1	15:1	○ 해당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 최소 1명 이상 ※ 운영담당자와 겸임 가능	○ 활동장소에 따라 참여청소년수가 30명 초과시, 매 20명 단위로 지도자 1명씩 추가 배치

- ※ 실내·외: 집 또는 건물의 안. 지붕 혹은 벽이 있는 장소 및 인증활동을 운영하는 건물의 주변 (예: 교육장, 천막, 천체관측실, 수련시설의 운동장, 캠프화이어장, 체험장 내 영농체험장 등)
- ※ 야외: 시가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들판이나 노천. 주 활동장소의 보험목적물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청소년활동보험 혹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는 활동 공간(예: 공원, 하천, 사적지, 유적지, 시장 등)
- ※ 제2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아닌 경우라도 수상활동, 스키의 경우 별표 15-2의 배치비율을 준용함.

[별표 15-2] 인증수련활동 지도자 배치 규정 - (인증기준 4-2번 관련)

참여형태 활동구분	세부 내용	체험과정 참여		사전교육 교육대기	지도자 자격 (※ 운영담당자와 겸임 가능)	
		수중	수상			
수상활동	호흡용 공기통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중	5:1	30:1	○ 체험과정에 참여하는 지도자 전원 수상인명구조 자격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소지자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상	10:1			
	수상과 수중을 제외한 연안해역이나 무인도서 활동	기타	15:1			
산악활동	클라이밍(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4시간 이상 야간산행	15:1				○ 확보된 지도자 수 대비 3:1의 비율로 해당분야 유자격자 배치
장거리 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짚라인, ATV탐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는 수련활동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1:1				

※ 일정규모 이상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5-1의 배치기준을 준용함.

[별표 16] 인증심사원 징계 기준 - (제25조 관련)

위 반 사 항	처분		
	1차	2차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위촉된 경우 ○ 규칙 제15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위촉된 경우 ○ 인증심사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뇌물을 수수, 요구, 알선한 경우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분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누설한 경우 	자격정지	해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심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연수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인증위원회가 지정한 직무수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자격정지	해촉

[별표 17] 전문인력 교육과정 지정 기준

항목	기준
1. 시설·설비 기준	가. 안전교육장(시청각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50제곱미터 이상) 나. 행정실(10제곱미터 이상) 다. 화장실(남녀로 구별되어야 한다)
2. 강사 기준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안전교육 강사를 2명 이상 둘 것
3. 운영 기준	12시간 이상의 안전관련 교육과정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할 것
4. 그 밖의 기준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26조의3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별표 18] 인증수련활동 인증사항 변경승인 요청기준 (제39조 관련)

□ 변경요청항목

변경항목	승인기준	
지도자	운영담당자	· 운영담당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재직 확인 시
	전문인력	·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재직 확인 시
	전문지도자	· 프로그램 변경이 승인되는 경우 관련 전문지도자의 적합한 변경 여부 확인 시
프로그램	· 활동의 목적과 목표, 주요 프로그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프로그램 운영 평가결과를 반영한 일부 단위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경우	
활동장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이 진행될 수 있는 사용여건, 점검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기관정보	· 동일한 대표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명칭, 주소 등만 변경하는 경우 (등기부변경내역 확인)	
예산	· 물가변동, 프로그램 질적 수준 제고 등의 사유로 참여청소년의 참가비용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	

□ 변경요청 불가능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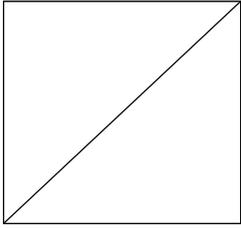
변경항목	세부 내용 및 예시
운영주체	· 위수탁주체의 변경, 사업대표자의 변경(기관 내 인사이동 제외)
목적·일정 등	· 활동목적의 변경 혹은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의 변경 · 활동 일정의 변경 (예. 1박2일 → 2박3일, 1박2일 → 6시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프로그램의 변경
대상연령	· 활동대상의 연령을 바꾸어 운영하려는 경우

□ 운영기관 자율 변경 가능 항목 및 승인기준

변경항목	세부 내용 및 예시
참여청소년 인원	· 인증신청 시 대상인원 이내의 변경
프로그램	· 전체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및 내용은 동일하나 단위프로그램의 운영 순서를 변경 · 인증신청 시 제시한 대체프로그램으로의 변경

※ 위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요청 사항은 그 사유와 내용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가부 의결

[별지 제1호 서식] - (제9조 제1항 관련)



의안번호	제 호
의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의결사항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안건

제 출 자	
제출년월일	20 .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서**

수 신 20 . . .
.

제 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 년 월 일 시
- 2. 장 소 :
- 3. 의 안 :

의 안 번 호	건 명	의결구분
제 호		
제 호		
제 호		

첨부 인증위원회의안 부. 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제 _____ 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서면결의서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의결결과	가·부		가부내역
	가	부	
			별첨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인)

※ 가 부란에는 가 부별 위원의 수를 구분 기입함.

(별지 제3호 서식 관련)

청 소 년 수 련 활 동 인 증 위 원 회 서 면 결 의 서

수 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20 . . .

제 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서면 부의안에 대한 본 위원의 의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의안번호	안 건 명	가·부	
		가	부
제 호			

20 . . .

위원

(인)

[뒷면]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 기재요령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로 기재합니다.
 - ② 주 소 : 자택 및 직장의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전자우편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③ 직장명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명 및 담당업무, 직위를 기재합니다.
 - ④ 학 력 : 해당하는 학력 란에 졸업 연월일 출신학교명과 학과 또는 전공을 기재하고, 수학 구분란에 ○표를 합니다. (석박사 졸업의 경우 학위등록번호 기재)
 - ⑤ 청소년활동분야경력 : 청소년활동분야 경력은 첨부된 경력증명서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합니다.
 - ⑥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실적
 - 인증수련활동 개발 실적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주최후원한 전국 규모의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에서 입상한 경우나
 - 정부부처, 시도, 국책연구기관, 대학에서 출판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에 연구원으로 참여한 실적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⑦ 자격/면허 : 청소년활동 분야와 관련된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 기타경력 : 청소년활동분야 전문 연수 경력, 심사 경력, 대학 강의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⑨ 전문분야 : 응시자의 전문분야 (해양활동, 문화체험활동, 국토순례프로그램 등)를 기입합니다.
2.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을 부착 합니다.
 3. 접수된 원서는 기재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는 형식요건 검사를 거쳐 접수가 완료 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수험표는 면접심사 시 접수증 교환 하여 교부합니다.

[2쪽]

1. 수험표는 면접 시 필히 지참 하여야 합니다.
2. 수험표를 소지하지 않은 응시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진(원서와 동일 원판) 1매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면접시험장에서는 응시표를 좌측 가슴에 부착하고 면접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수험표 및 접수증〉

수험표		접수증	
제 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선발		제 기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선발	
※응시번호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접수일자	
	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접 수	(인)
소 속		※ 접수 날인이 없는 것은 무효임	
반명함판 사진 3.5cm×4.5cm		년 월 일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별지 제6호 서식] - (제15조 관련)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참가신청서

접 수 번 호	
---------	--

성 명		전 화	
인증심사원 등록번호		휴 대 전 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제21조 관련)

인증심사원 직무연수 수료증

제 호

수료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무연수기간 : . . ~ .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연수를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별지 제8호 서식] - (제22조 제1항 관련)

인증심사원 등록번호		인증심사원 등록 카드										사 진 (최근 6개월이내) 3cm×4cm			
※															
인적 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전 자 우 편															
직장명						담당업무					직 위				
학 력	년 월 일	고등학교 / 검정고시													
	년 월 일	대학교 과 (졸업·수료·재학·휴학)													
	년 월 일	대학교 (석사, 박사)				대학원 학기 (졸업·수료·재학·휴학)				전공		학위등록번호			
	년 월 일	대학교 (석사, 박사)				대학원 학기 (졸업·수료·재학·휴학)				전공		학위등록번호			
청소년 활동분야 경력	종사기간(연월일)	종사 년, 개월		종사시설·단체·기관명				담당업무							
	~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실적	개발 일자	개발 프로그램명								확인기관					
	~														
자격/ 면허	취득일자(연월일)	자격명칭		급류		자격/면허번호		발급기관							
	~														
청소년 활동분야 전문연수 경력	연수기간(연월일)	연수실시기관		연수과목 및 내용				연수시간							
	~														
	~														
인증 심사 경력	접수번호	프로그램명				심사 유형	인증 유무	이행여부 확인결과							
								유지	시정	취소					
인증 심사 관련 상벌 사항	구분	상벌 내용				조치일자		사유							
전문 분야															
특기 사항															

[별지 제9호 서식] - (제22조 제3항 관련)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위촉장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증심사원등록번호 :

귀하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인증심사분석표

기준번호	심사내용 (제출서류)	심사의견	점수
공 통 기 준	1		
	2		
	3		
	4		
	5		
	6		
개 별 기 준	1		
	2		
	3		
	4		
	5		
특 별 기 준	1		
	2		
합 계			

※ 인증기준별로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발급번호	
------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인 증 번 호 : _____

운 영 기 관 명 : _____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_____

활 동 명 : _____

주 요 활 동 장 소 : _____

인 증 기 간 : _____

참 여 대 상 : _____

참 여 인 원 : _____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인증
심사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장



[별지 제18호 서식] - (제37조 관련)

인증수련활동의 표지



[별지 제19호 서식] - (제38조 관련)

접수번호	
------	--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인	인증번호	제 호	기 관 명	
	활동명			
신청내용	인증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변경내용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사유를 간략히 기술하고, 변경 전·후 비교표와 관련증빙서류를 별첨		
위와 같이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보완 · 개선 요청서

심사 개요	인 증 번 호	제 호	활 동 명	
	심 사 기 간		심 사 장 소	
보완개선 요청사항	1.			
	2.			
	3.			
	4.			
	5.			
	6.			
	7.			
	8.			
	9.			
	...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완· 개선을 요청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p>				

발급번호	제 호
------	-----

국가 인증수련활동 기록확인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활동기간:

① 활동내용

1	일자(기간)		시간(일수)	
	인증수련활동명	[호]		
	활동영역			
	기관명			
	활동내용			
2	일자(기간)		시간(일수)	
	인증수련활동명	[호]		
	활동영역			
	기관명			
	활동내용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지도자 승낙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자 우 편	
전 화		휴 대 전 화	
신 청 기 관 명			
활 동 명			
지도기간 및 시간			
지 도 역 할	※ 활동 운영 시 실제 담당할 역할을 요약 기술		

본인은 귀 기관에서 인증 신청한 상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전문지도자, 보조지도자로 해당 지도 역할을 담당할 것을 승낙합니다.

. . .

성 명 : (인)

인 증 신 청 기 관 명

인증심사 현장 방문 보고서

프 로 그 램 개 요	접 수 번 호			
	프 로 그 램 명			
	기 관 명			
	주 소			
	전 화	팩스		
현 장 방 문 일				
심 사 결 과	심 사 내 용		▶ 중점내용	
	▶ 관계자 면담결과			
	▶ 심사종합결과			
	기 타 의 견		▶	

위와 같이 접수번호 (0000-000) 건의 현장방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인증심사원 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 (제45조 관련)

청소년활동 참여 기록			
이 름		생 년 월 일	
인 증 번 호	제 호	활 동 명	
운 영 기 관 명		활 동 장 소	
활동일자(기간)		시 간 (일 수)	
활 동 영 역		만 족 도	
프로그램 개요			
담 당 자		기 관 연 락 처	
▶ 활동참여 동기			
▶ 활동내용 및 소감			
▶ 활동 이미지			
▶ 지도자 의견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자체 점검표

인증번호	제	호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활동장소							
평가점수 (총괄)	기 확 본 인	실시일자		통보	변경사항 확인		활동기록 등재
영역 확 인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개별기준1	개별기준2		
※ 이행여부 확인 자체점검표 작성방법 참조하여 상,중,하로 기재							
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의 이행여부 확인을 자체 점검하였음. 년 월 일 운영담당자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미 실시 사유서			
인 증 번 호	제 호	기 관 명	
활 동 명			유 효 기 간
미 실시 사유	구 분	※ 아래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세요. (중복 가능) <input type="checkbox"/> 국가 재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미 실시 <input type="checkbox"/> 인근 지역 내 유행성 질병으로 인한 미 실시 <input type="checkbox"/> 운영기관의 휴폐업 및 독립 등의 변화로 인한 미 실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세 부 항	※ 관련한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바랍니다.	
향 후 실 시 계 획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의3제1항2호에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인증수련활동의 미 실시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2호 서식] - (제26조의3 관련)

제 호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서

안 전 교 육 위 탁 기 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기관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4항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3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장

[별지 제33호 서식] - (제26조의3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

기 관 명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정일	지정취소일 (또는 업무정지 기간)	
사유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지정취소 업무정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이 지정취소 된 경우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서를 200 년 월 일까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가까운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반납 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장

제 호	확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교육과정명 :	
수료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료시간 : 총 시간	
위 사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제4항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 제26조의4에 따른 「과 정 명」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전교육 위탁기관장 [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14.7.22.] [법률 제12329호, 2014.1.21., 일부개정]

제9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이라 한다)을 주최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2.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3.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4.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②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모집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운영 또는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사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을 통보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보완사항을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9조의3(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 의무 등) ① 제9조의2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 및 보호자(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서면으로 보증한 때에는 신고자가 건강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② 신고자는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본조신설 2013.5.28.]

제9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위하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을 활동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본조신설 2014.1.21.]

제9조의6(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제36조제2항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

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4.1.21.]

제9조의7(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를 수리한 후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내수면, 해수면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
3. 제9조의2에 따라 신고 수리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과 위험발생의 방지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련한 조치

[본조신설 2014.1.21.]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1.21.]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재위탁을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시기·목적·대상·내용·진행방법·평가·자원조달·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법인·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4.1.21.]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1.]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자
2.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한 자

[전문개정 2014.1.21.]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모집을 한 자
3.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5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6.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9. 제21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0. 제25조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휴지, 재개 또는 폐지한 자
12. 제38조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1.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인증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증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활동기록 유지·관리 등) ① 국가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활동이 끝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그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활동참여 청소년의 기록 자료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참여기록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신청·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련활동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또는 활동실시 시작 45일 이전에 인증위원회에 인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증을 요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인증심사의 효율성 제고) ① 인증위원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선발과 활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련활동 내용 등의 기록 및 통보)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활동시설 및 개인, 법인·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활동기록 및 인증수련활동 결과를 해당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기준을 준수한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계획서(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3.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
4. 법 제25조에 따른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신고서에 그 사유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시작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의3(건강상태 확인 방법)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제1조의4(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정보의 공개)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를 수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활동 세부내역서의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방법 등)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선발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선발한다.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소지자
 2. 청소년활동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②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 ③ 인증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기준, 인증절차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④ 인증심사원은 2년마다 2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청소년수련활동
2. 별표 7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3(인증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예외) 법 제36조제2항제7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15조의4(전문인력 요건) ① 법 제3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교육 수료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제4호에 따라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는 응급구호사업 전문 종사자 및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4.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5. 그 밖에 인증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응급처치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 자격이나 전문자격에 관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5조의5(인증수련활동의 사후관리)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의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부터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위원회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행확인의 절차에 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시정을 한 자는 그 결과를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및 시정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인증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의6(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의견제출) ① 법 제36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라 인증위원회가 인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인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의7(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① 인증위원회는 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5조의8(위탁 제한 중요 프로그램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2.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위탁하려는 프로그램이 둘 이상인 경우 각 프로그램 운영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그 프로그램 모두를 말한다)

[별표 6]

운영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기준 (제9조의3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횡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사고 등의 발생 사유의 동기·내용·횡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사유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1. 시설이 붕괴된 경우	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	3개월 운영 중지	
2. 시설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법 제20조의2 제1항제1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3.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 제1항제3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5.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법 제20조의2 제1항제4호	2개월 운영 중지	3개월 운영 중지

[별표 7]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제15조의2제2호 관련)

구 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호버크라프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클라이밍 (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집라인 (Zip-line),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별표 8]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7제2항 관련)

I.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위반 행위자가 최근 5년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없이 인증수련활동을 해 온 경우
 -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II.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	취소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2호	경고	3개월 정지	취소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법 제36조의3제1항제3호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취소